



# 지방 재정협치 실태와 개선방안: 사전협의회제 도입을 중심으로

김병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책임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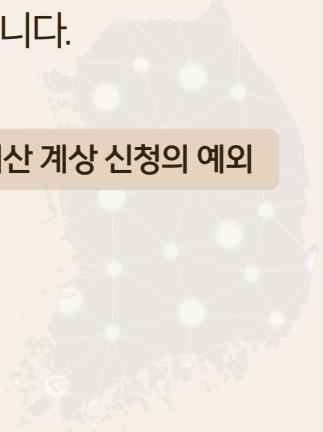


# “지자체가 원하지 않아도 중앙정부가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법」 제4조(신청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제5조의 예외 규정에 따라  
지자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예산 편성이 강제될 수 있어  
지방자치권 침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조금법 제4조 예산 계상 신청

제5조 예산 계상 신청의 예외





#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주체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중앙관서와 협의하는 주체는  
지자체가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실제 비용을 부담하는 지자체는  
일부 의견 제출만 가능할 뿐,  
직접적인 재정 협상권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행안부 장관  
현행 협의 주체

의견 제출만  
지자체 참여 수준

243개  
전국 지자체 수



# “연 1회 열리는 심의위원회, 제기능을 하고 있을까요?”

「지방재정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재정관리위원회는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등을 심의합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연 1회만 열려,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2021  
3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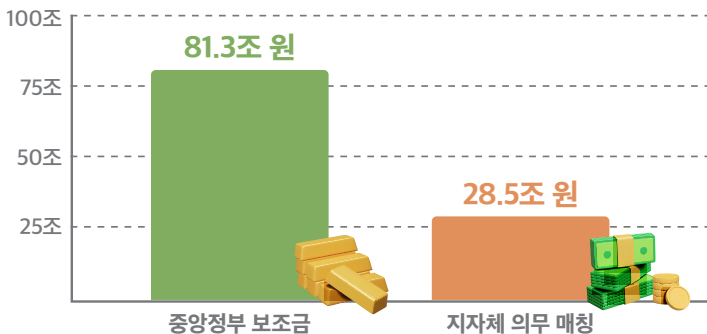
2022~  
연 1회로 축소





# “중앙이 결정하고, 지방은 낸다, 거부권 부재”

국고보조사업 588개의 국비 총액은 81.3조 원,  
지자체가 의무 매칭해야 하는 지방비는 28.5조 원입니다.  
사업당 평균 지방비만 485억 원에 달하지만,  
지자체는 이 부담에 대해 실질적인 협의권이 없습니다.



사업당 평균 지방비 485억 원 · 총 588개 사업 · 평균 보조율 58%

출처: 김병남(2025), 「중앙-지방 재정협력 실태와 개선방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2022년도 예산 심의 10개 사업 중 완전 반영은 단 1건(10%)”

지방재정관리위원회가 2022년도 예산요구안을  
심의한 10건 중 완전 반영 1건(10%),  
일부 반영 1건(10%)에 그쳤습니다.  
영아수당 등 대규모 사업의 보조율 조정 권고는  
기획재정부 예산심의에서 미반영되었습니다.  
이행을 강제할 법적 조항이 없는  
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10건  
심의 사업 수

2건(20%)  
완전 반영 1건, 부분 반영 1건

8건(80%)  
미반영



# “지방자치단체협의체 대표자에게 권한 부여, 지방 협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법」을 개정해 행안부 장관이 대신하던 협의 주체를 지자체 협의체 대표자로 명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243개 지자체를 직접 대변하며 중앙정부와 대등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재정법 개정

보조금법 개정



# “사전협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4가지 법적 의무 협의 기준 정립합니다”

주요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내  
의무 협의 기준(제27조의9) 신설을 제안합니다.

- 1 지자체가 신청하지 않았지만 예산 편성 필요한 사업
- 2 전체 지자체의 50% 이상이 참여하는 전국적 사업
- 3 기준보조율이 60% 이상인 국가 사무 성격의 사업
- 4 전체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 총액이 연간 5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



## 결론

# “비용 부담 주체가 직접 참여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전협의제는 사후 갈등 비용을 줄이고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비용을 부담하는 지자체가 협의의 주체가 되는 것이  
재정협치의 당연한 원칙입니다.

갈등 비용 절감  
사전협의 효과 ①

예측 가능성 확보  
사전협의 효과 ②

